

# 안전보건관리규정

(주) 대 승

## 【제 · 개정 이력】

연번	제 · 개정일	제 · 개정 사유	비 고
1	2001. 03. 15	제정	
2	2004. 12. 01	개정	
3	2017. 03. 23	개정	
4	2017. 06. 15	개정	
5	2018. 02. 22	개정	
6	2019. 04. 04	개정	
7	2020. 03. 17	개정	
8	2021. 04. 01	개정	
9	2022. 03. 05	개정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조문별 찾아보기】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대표이사의 책무 등】	
제5조【근로자의 의무】	
제2장 안전 □ 보건관리 체제	1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7조【관리감독자】	
제8조【안전관리자】	
제9조【보건관리자】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운영】	
제13조【심의 · 의결사항】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5조【회의결과 공지】	
제4장 안전보건교육	4
제16조【안전 · 보건교육】	
제17조【교육실시 방법】	
제5장 안전관리	5
제18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제19조【안전진단】	
제20조【위험성평가】	

제21조【안전표지】	.....
제22조【 <b>작업중지</b> 】	.....
제23조【방호조치】	.....
제24조【안전순찰】	.....
제25조【사업장의 안전조치】	.....
제26조【안전수칙】	.....
제27조【안전기준】	.....
<b>제6장 보건관리</b>	<b>..... 7</b>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
제29조【유해부서 보건수칙】	.....
제30조【보호구】	.....
제31조【보건기준】	.....
<b>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b>	<b>..... 7</b>
제32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
제33조【사고조사 및 보고】	.....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
<b>제8장 중대재해처벌법</b>	<b>..... 8</b>
제35조【시행】	.....
제36조【적용범위】	.....
제37조【재해범위】	.....
제38조【직업성 질병의 범위】	.....
제3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제40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41조【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42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43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제44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제45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46조【손해배상의 책임】	.....
제47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b>제9장 보칙</b>	<b>..... 13</b>

제48조【문서기록 보존】.....  
제49조【규정 외 사항】.....

**제10장 부칙..... 13**

제1조【시행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주)대승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대승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책무 등) ① 대표이사는 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근로자를 관리·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무부서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①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또는 공장장)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 유자격자로 선임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 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 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산업재해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8.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영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따른 유자격자로 선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각각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 위원장일 경우, 공동 위원장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



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보건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7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담당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 제5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 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정기점검
4. 안전교육훈련
5.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 수립
6.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9.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성평가)** ① **대표이사**는 건설물·기계·기구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정기 위험성평가는 상반기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께 보고하여야 하며, 하반기에는 수시평가를 포함하여 정기 위험성평가 개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표지)** ①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종류, 형태, 용도, 부착장소, 색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과 별표7에 따른다. [붙임 1]참조

**제22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방호조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영 [별표20]에 따른 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한다.

**제25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 제26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장 보건관리

-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거 매년(현장직 1년 1회,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한다.

제29조(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호구)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2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④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리감독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안전사고-안전관리자, 직업병-보건관리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고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 ⑦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 ⑧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재해분석 및 대책)** 안전관리자는 발생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장 중대재해처벌법

**제35조(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7조(재해범위)**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38조(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41조(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2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3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45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6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제47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장 보칙

**제4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단,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30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49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 제10장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2.03.05.)

[붙임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 표 기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 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 금지 	2 경고 표 기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 물질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화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메달린물체 경고 	209 낙화물 경고 	210 고온경고 	210-1 저온경고 
211 몸균형상실 경고 	212 레이저광선 경고 	213 발암성□변이원성□ 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 기과민성 물질 경고 	214 위험장소 경고 	3 지 시 표 기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 내 표 기	401 녹십자 표기 	402 응급구호 표기 	402-1 들 것 	402-2 세안장치 	403 비상구 	403-1 좌측비상구 
403-2 우측비상구 	5 문 자 추 가 시 범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내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내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내자신이 일으킨 사고로써 오는 회사의 재산과 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li>▶내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li> </ul>			